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반영

 **서울시농수산물공사**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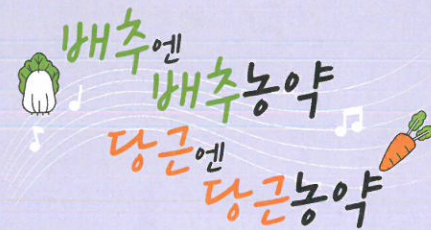
아래 농약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어 더 이상 추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세요.

농약성분	상표명
다이아지논	꿈땅, 다이아톤, 다이진, 다지논, 대풍, 델타포스, 독심, 비틀킹, 시나나, 심토충, 아리다수진, 알짜, 인서트, 차칸, 크레타
프로사이미돈	너도사, 다이렉스, 사이미돈, 스미렉스, 영일프로파, 이비엠젯사이트, 인바이오프로파, 임페리얼, 초그만, 팜이큐, 팜이탄, 팜자비, 팜청소, 프로팜
카보퓨란	동방카보, 이비엠물바사리, 큐라텔, 황제카보, 후라단
사이피메트린	강심장, 강자존, 강타자, 경농피레스, 나대로, 다모라, 도미넥스, 명중, 명쾌탄, 무스탕, 미성살충탄, 바이엘알파스린, 성보피레스, 수페라, 아리피레스, 알칸스, 울버린, 인바이오피레스, 충망치, 케레스, 콩코드, 특충탄, 푸레스, 퓨리, 피레탄, 하이피레스, 호위대, 화스타크, 화스타골드
클로티아니딘	고반발, 금관충, 논자랑, 뉴샷, 뉴투톱, 다아라, 다카바-관주, 다카바-에스, 더블포인트, 독소리, 독딱, 룡샷, 매머드, 방방곡곡, 볼케이노, 빅애니, 빅카드, 빗장, 빙고, 섬광, 성보스타, 세시미, 슈퍼볼, 스윙, 스트라이크, 시너라이즈, 연승, 오메가, 올인원, 유토피아, 은장도, 이조은, 자바라플러스, 충로드, 코벨소, 콤비스타, 크리텔, 파워크린, 풀가, 풀세트, 풀코스, 한소네, 황금볼, 히든샷

plus 아래의 농약 성분도 사용에 주의해 주세요!

테트라코나졸	이미다클로프리드	프로파자이트
티아메톡삼	디메토에이트	피프로닐
플루벤디아마이드	벤퓨라카브	메탈소듐
피리다벤	카보셀판	카벤다짐
플루켄코나졸	펜발레레이트	에토프로포스

바해바해 당당하세요~♪



인터넷

PLS 종합정보서비스

<http://mafra.go.kr/pls>

등록 농약 검색

<http://pis.rda.go.kr>

<http://www.nongsaro.go.kr>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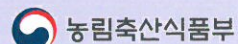
농진청 1544-8572

산림청 1600-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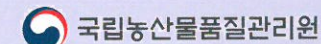
식약처 1577-1255

농관원 054-429-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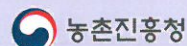
서울시농수산물공사 02-3435-039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PLS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란

- ➔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0.01ppm이 적용됩니다.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

왜 필요한가요?

- ➔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등록 농약 부족문제 해결

-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 DDT살충제 등 토양에 오래 남아있거나 다른 작물에 옮겨지는 농약을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에서 허용했습니다.

*등록된 농약 제품: ('18)54천개 → ('19)75천개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대

- ➔ 트리티코니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플로메토킨(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합니다.
- ➔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을 확대합니다.
- ➔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확대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농약 오염 최소화

- ➔ 농업용 드론 방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 ➔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진청 현장지원반」이 운영됩니다.
- *분쟁발생 → 시·군 기술센터 → 농진청 현장지원반

이것만 지켜주세요!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농약관리법 제23조]

